

해외건설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간 業務協力 約定書

해외건설협회(이하 "ICAK"라 한다)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라 한다)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업체의 해외건설시장 개척과 수주확대 등 해외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진출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하기로 한다.

제 1조 목 적

이 약정서는 우리 업체의 해외건설시장 개척과 수주확대 등 해외건설 산업 제반 현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협력 범위

ICAK와 KOTRA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한다.

1. 해외건설 프로젝트 수주 공동지원
2. 해외건설 시장 동향 및 프로젝트 정보 교환
3. 해외건설 세미나, 상담회 공동 개최
4. 해외건설 시장 개척 로드쇼 공동 파견
5. 주요 해외건설시장 소재 KOTRA의 KBC에 ICAK 주재관 파견 협력
6. 해외 주요 발주처 인사와 우리 업계 인사의 방문주선
7. 상호 교육 프로그램 실시
8. 양 기관의 관련부서 직원을 상호 파견·근무 협력
9. 기타 해외건설 시장개척을 위한 노력

제 3조 업무 협조

ICAK와 KOTRA는 제2조 각호의 세부 협력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며,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 워크숍 등을 공동으로 개최 할 수 있다.

제 4조 예산분담 및 업무분장 등

본 약정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분담과 업무분장은 양 기관이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 5조 신의 성실

ICAK와 KOTRA는 상대방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 하여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제 6조 협조 창구

1. 상호 업무협조의 효율성을 제고 및 신속 처리를 위한 협조창구로 ICAK는 기획팀을, KOTRA는 자원건설플랜트팀(現 프로젝트진출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창구의 부서장은 기관장을 보좌하여 상대방의 협조요청을 검토하고 상호 협의한다.

제 7조 비밀유지

ICAK와 KOTRA는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이 협약서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지득한 상대방의 정보와 자료는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 8조 효력

이 약정은 양 기관 대표자의 서명일로부터 발효하여 계속 유효하며, 각 당사자는 3개월 전에 상대 기관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제 9조 해석 등

이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기관이 상호 선의를 바탕으로 한 합의에 따르기로 한다.

제 10조 권리 · 의무의 승계

약정 체결 후 양 기관의 명칭, 대표자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협약에 따른 권리 · 의무를 포괄 승계할 수 있다.

이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8년 9월 23일

(ICAK)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20-23

해 외 건 설 협 회

회 장 이 용 구

이 용 구

(KOTRA)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9

대 한 무 역 투 자 진 흥 공 사

사 장 조 환 익

조 환 익